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179
----------	-----

提出年月日：1992. 10. 29.

提出者：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區廳長에게 委任되어 있는 建築許可 關聯事務가 法令改正으로 自治區 固有事務로 變更됨에 따라 委任必要性이 消滅된 事務를 削除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區廳長에게 委任되어 있는 建築에 관한 아래事務 削除함
(별표 1 건축과란)

- 1 建築許可 및 申告 關聯業務
2. 建築着工 · 竣工 申告受理 및 竣工檢査
3. 違法 建築物에 대한 措置
4. 建築委員會에 관한 事項

※ 1990年 6月 20日 大田直轄市 條例 第2023號에 依據 “建築物 10層以下,
建築物 延面積 10,000㎡未滿等”에 한하여 區廳長에게 委任하였음.

3. 參考事項

建築關聯法令 全文 改政(直轄市長 事務 → 區廳長 事務로 變更)

- 建築法：'91. 5. 31 法律 第 4361號
- 建築法 施行令：'92. 5. 30 大統領令 第 13655號
- 建築法施行規則：'92. 6. 1 建設部令 第 504號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건축과란 “제1호”, 및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제1호”중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을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으로 하고, “제6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6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 건축과관 〉

현	행	개	정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p>1. 건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1층이상 건축물, 연면적10,000㎡이상 건축물,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제외)</p> <p>가.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나. 건축허가 신고사항 변경 다. 건축허가 취소 및 착수기간 연장 라. 공사감리자의 위반건축물 보고수리 마. 착공·준공·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바. 준공검사 전 가사용 승인 사. 3층이상의 건축물등에 대한 중간검사 아. 위법(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 자. 보고징구 및 검사 차.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p>		(삭 제)	

현행		개정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2. 건축허가시 도로의 위치지정 (11층이상 건축물, 연면적10,000㎡이상 건축물,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제외)		(삭제)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징수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1.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징수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4. 기계식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정 (11층이상 건축물, 연면적10,000㎡이상 건축물,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제외)		(삭제)	
5. 건축위원회에 관한 권한 (11층이상 건축물, 연면적10,000㎡이상 건축물,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제외)		(삭제)	
6.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	주차장법 제19조의4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	주차장법 제19조의4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2. 11.

內 務 委 員 會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2年 11月 11日

內 務 委 員 會

I. 審 查 經 過

1.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2年 10月 29日, 大田直轄市長
2. 回 附 日 字 : 1992年 10月 30日
3. 上 程 日 字 : 第16回 大田直轄市 議會(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1992年 11月 6日)
上程, 審議,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擔當官)

1. 提 案 理 由

區廳長에게 委任되어 있는 建築許可 關聯事務가 法令改正으로 自治區 固有事務로 變更됨에 따라 委任必要性이 消滅된 事務를 削除 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區廳長에게 委任되어 있는 建築에 關한 아래 事務 削除함
(별표 1 建築課欄)

1. 建築許可 및 申告 關聯業務
2. 建築着工·竣工 申告修理 및 竣工檢査
3. 違法 建築物에 대한 措置
4. 建築委員會에 關한 事項

※ 1990年 6月20日 大田直轄市 條例 第2023號에 依據, 「建築物 10層以下, 建築物 延面積 10,000m²未滿等」에 한하여 區廳長에게 委任하였음.

Ⅲ. 專門委員 檢討要旨(專門委員 鄭泰益)

本 案件은 現在 區廳長에게 委任되어 있는 建築許可 關聯 業務가 지난 91. 5. 31. 關係法人 建築法이 改正됨에 따라, 自治區 固有 業務로 變更되어, 委任 必要性이 消滅된 一部業務를 削除코자 하는 內容임.

削除하는 委任業務의 內容은

建築許可 및 申告關聯業務와 建築着工·竣工申告修理 및 竣工檢査 그리고 違法 建築物에 대한 措置 및 建築委員會에 關한 事項이 되겠음.

이는 現行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 建築課 所管의 第1號와 第2號, 第4號 및 第5號를 削除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條項을 整理코자 하는 것임.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第1號는 現行建築의 許可 및 申告, 變更, 竣工檢査等이 區廳長 委任事務로 規定되어 있으나 建築法 第8條, 第9條, 第16條, 第17條

및 第21條가 改正됨에 따라 本 內容에서 이미 區廳長 權限事項으로 變更되어, 委任 必要性이 消滅되었다 하겠음.

둘째 第2號는 建築許可時 道路의 位置指定에 關한 事項으로써 역시 建築法 施行令 第30條에서 區廳長이 직접 指定토록 規定되어 있어 이를 削除하는 것임.

셋째 第4號는 機械式 建築物 附設駐車場 指定에 關한 事項으로써 이는 關聯 駐車場法 第12條에서 이미 區廳長 權限事項으로 規定됨에 따라 이를 削除하는 것임.

넷째 第5號 建築委員會 權限 事項으로써 역시 建築法 第4條에서 區廳長이 自體 建築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어, 이를 削除코자 하는 것임 .

따라서 本 改正 條例案은 關聯 上位法의 改正에 따른것으로써 削除 整備함이 妥當할것으로 思料됨 .

IV. 討論要旨

- 駐車場 業務의 一貫性 있는 推進
- 建築許可 事項

- 住民入場에서의 條例改正 推進
- 條例 改正의 遲延 事由

V.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入住 審議 權限은○ 機械式 駐車場 設置 許可 基準이 各區廳마다 相異한데○ 關聯法規의 改正日字上 條例 改正이 遲延된 事由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入住審議는 市에서, 許可만 區에서○ 一貫性있는 基準을 마련하겠음○ 全面 改正에 따른 業務研鑽上 多小 遲延되었음.

VI. 審查結果 : 原案可決

VII.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